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구단108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8,702,740원, 지방교육세 2,657,310원, 농어촌특별세 1,328,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4. 폐축전지 수집 운반업, 비철금속 연, 니켈 재활용 제조 중간처리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나. 원고는 회사 설립 전인 2010. 8.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redacted]구 C 공장용지 788㎡ 등 별지1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별지 2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별지1 부동산과 별지2 기계기구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0. 9. 1.경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6. 20. 주식회사 [redacted]텍(이하 '[redacted]텍'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8.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창업중소기업인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8. 25.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종전 사업자인 B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한 것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D은 B의 임원이었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임원 E은 B이 2009. 6. 26. 폐업한 이후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에 볼 때, 원고는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추징사유를 통지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5. 10. 6. 광주광역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주광역시장은 2015. 11. 4.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 하였다.

사.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28,702,7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657,3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328,6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던 [redacted]텍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기존 법인인 B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B의 목적사업이 연(납, 이하 '연'이라 한다) 가공업, 제조업임에 반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은 연 가공 이외에 니켈 가공업 등이 추가되었고, B은 폐산축전지 재활용 가공 시 연 스크랩을 생산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니켈 스크랩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수할 당시 연을 생산하던 별지2 기재 기계기구의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해 새로운 기계기구를 구입하여 니켈 가공업을 주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기존 사업인 연 가공 매출액은 원고의 총 매출액 중 약 23.4%에 불과한 반면(2010년도 총 매출액 174,860,000원 중 0원, 2011년도 총 매출액 184,213,425원 중 51,292,875원, 2012년도 총매출액 중 153,040,000원 중 63,126,900원, 2013년도 총 매출액 201,252,150원 중 36,358,200원, 2014년도 총매출액 223,161,550원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60,918,200원, 2015년도 총매출액 중 188,818,285원 중 51,697,500원), 새로 설치한 기계기구인 반사로를 이용한 니켈 가공 매출액은 원고의 총 매출액 중 76.6% 이상(2010년도 100%, 2011년도 72.15%, 2012. 58.75%, 2013년도 81.93%, 2014년도 72.70%, 2015년도 71.56%)을 차지하고 있어, 원고는 B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원고가 [redacted]텍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은 5억 3,000만 원임에 반하여, 이후 신규로 투자한 기계기구 등의 가액은 22억 6,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원고의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 중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가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399%에 불과하여 100분의 30 미만이므로, 원고는 '창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은 1999. 8. 30. 이 사건 부동산 내 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비철금속(순연, 합성연) 가공, 재생, 합금, 연괴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자 등록상 업태는 제조업이고, 주업종은 연 가공업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원래 F의 소유였다가 2000. 6. 26. B 앞으로 소유권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이전되었고, 그 후 소외 G가 2004. 6. 30.경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다시 [redacted]텍이 2012. 5. 14.경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위와 같이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B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도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6. 26.경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계속 점유하다가 2010. 8. 2.경 원고에게 임대기간을 2년(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4) 그 후 2010. 8. 24. 설립등기를 한 원고는 업태를 제조, 도매업으로, 업종을 연, 니켈 가공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0. 9.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 가공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

5) 사업 개시 당시 원고의 주주 구성은 이사 E과 그의 자인 대표이사 D이 지분 각 25%를, D의 장모인 H이 지분 50%를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B이 폐업 할 당시 B의 대표이사 I은 E의 사위이고, 감사는 원고 대표이사인 D이었으며, 이사 E은 2011. 8. 11.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6) 원고가 2010. 9. 1. 사업을 개시한 이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매출신고금액
2010. 9. 1. ~ 2010. 12. 31.	174,860,100원
2011. 1. 1. ~ 2011. 6. 30.	73,363,800원,
2011. 7. 1. ~ 2011. 12. 31.	99,600,125원
2012. 1. 1. ~ 2012. 6. 30.	115,557,900원
2012. 7. 1. ~ 2012. 12. 31.	37,482,100원

7) 한편 2012. 5. 14.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낙찰 받은 [redacted]텍은 2012. 5. 22. 광주지방법원 J로 원고와 B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6. 인용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정을 받았고, 원고와 B이 광주지방법원 2012라320호로 항고하였으나 2014. 3. 27. 기각되었다.

8) 위 인도명령 사건의 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3. 6. 20. 원고와 [redacted]텍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시 [redacted]텍이 원고와 B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858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redacted]텍은 2013. 8. 7. 그 소를 취하하였다.

9) 원고는 2014. 4. 3.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산, 폐알칼리 및 납 화합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관하여 B의 인허가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하여 그 허가증을 교부받았다.

10) 또한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장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공장등록변경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연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3)으로 등록한 공장업종(분류번호)에는 변동이 없었다.

1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산업분류는 다음과 같다.

세분류	세세분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분류코드: 2421) 비철금속광석·괴(덩어리) 및 스크랩 등을 제련, 정련 또는 합금하여 분, 입, 괴, 퍼들바, 빌렛, 블룸, 슬라브 및 기타 1차 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만한다. 제련 및 정련활동에 결합되어 수행되는 압연 및 연신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분류코드: 24213)** 연(납) 및 아연의 광석 또는 괴(덩어리) 및 스크랩을 제련, 정련 및 재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의 합금을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도 포함된다.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분류코드: 24219)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 주석,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간,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지르코늄 등의 비철금속광석 또는 괴(덩어리) 및 스크랩을 처리하여 제련 및 정련하거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이들의 합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 을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기존 법인인 B의 자산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4항 각 호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존 법인인 B이 2009. 6. 26.경 폐업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나, 이후에도 B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계속 점유하다가 2010. 8. 2.경 원고에게 임대하여 이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폐업에도 불구하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계속 점유·수익하고 있었던 반면, 소유자들인 G나 [redacted]텍은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임차한 것은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B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원고의 경영진이나 주주들이 모두 친인척관계의 특수관계인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임차한 뒤 2010. 9. 1. B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 연 가공 등의 사업을 개시하여 2010. 12. 31.까지 174,860,100원의 매출을 거두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종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년도 매출액 174,860,100원은 모두 니켈 가공업에 의한 매출액이고, 원고의 주된 사업은 니켈 가공업이어서 B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은 조특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연 가공업과 니켈 가공업은 모두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에 해당하여 세분류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등은 폐산 축전지를 재활용하여 연을 가공하는 시설들이고, 새로 추가된 사업인 니켈 가공업을 위한 기계기구를 설치한 시기는 2011년경 이후부터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2010. 9. 1. 당시에는 니켈 관련 매출을 거두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전 사업의 자산을 그대로 인수한 원고는 사업개시 당시 그 시설을 이용해 B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 연 가공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이를 영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받아들일 수 없다.

3) 니켈 가공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지 여부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은 각 호의 창업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제3항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사업개시 당시인 2010. 9. 1. 종전 사업에 추가한 니켈 가공업의 매출액이 이후 다음 2분기인 2011년도 총 매출액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여 새로운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2, 갑 제3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1년도 계정별 원장, 2011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원고가 2011. 4. 5.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22억 6,500만 원 상당의 기계기구를 각 설치하여 이를 유형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갑 제2호증의2, 갑 제3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경 위 22억 6,500만 원 상당의 설비를 이용해 니켈 가공업을 영위하여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의 4개월간의 연 가공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은 174,860,100원인 반면, 2011년도 매출신고액은 172,963,925원[1], 2012년도 매출신고액은 153,040,000원으로서 2010년도에 비해 오히려 매출액이 감소하였는바, 원고가 인수한 종전 사업인 연 가공업을 중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2011년도의 매출액 중 니켈 가공업 매출액이 5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갑 제40호증의 21에 의하면, 원고의 2011년도 니켈 매출액은 18,225,900원이 인정될 뿐이다).

② 한편 원고는 2011년도 니켈 가공업을 위해 22억 6,500만원의 투자하여 새로운 기계기구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계기구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매입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된 시설의 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또한 2011년도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자는 G이었고, 2012. 5. 14.에는 [redacted]텍이 이를 낙찰 받아 원고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원고가 소유자인 G나 [redacted]텍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바, 이와 같이 당시는 경영이나 사업의 지속이 매우 불확실해 인수한 자산을 이용한 종전 사업만을 영위하는 것도 벅찬 상황으로서 투자금액의 회수를 장담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2011년도에 새로운 니켈 가공업을 위해 22억 6,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④ 원고가 창업사업계획서에서 밝힌 2013년도 판매계획에는 전체 계획 매출계획 35억 원 중 '연' 관련 매출계획이 25억 원, '니켈' 관련 매출계획은 10억 원으로서

1) 표준손익계산서(갑 제35호증의 3)에는 원고의 2011년도 매출액이 184,213,425원으로 기재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다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니켈'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8.5%에 불과하다.

⑤ 원고가 2014. 10. 7.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한 폐기물처리계획(변경) 확인 증명서에 의하면, '연' 관련 황산의 처리계획은 12,500kg(월), 150톤(연) 반면, '니켈' 관련 폐알칼리의 처리계획은 5,000kg(월), 60톤(연)에 불과하고, 주된 생산품도 '연'으로 표시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가 2010. 9. 1. 사업개시 당시 니켈 가공업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원고의 사업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인수한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위 창업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가액이 총 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시점은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법문 상 명백한바, 갑 제3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할 당시 원고는 아무런 사업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총 자산 가액 22억 6,500만원의 산출시점으로 주장하는 시기는 2011년경이어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의 총 자산 가액이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된 기계기구등의 총 가액이 22억 6,500만 원 상당이라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종합하면,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2010. 9. 1. 당시 원고의 총 자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원고는 기존 법인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별지1

부 동 산 의 표 시

1.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공장용지 788제곱미터

2. 동 소 [redacted] 도로 153제곱미터

3. 동 소 [redacted] 도로 26제곱미터

4. 동 소 [redacted] 도로 3제곱미터

5. 동 소 [redacted] 공장용지 819제곱미터

6. 동 소 [redacted] 도로 269제곱미터

7. 동 소 [redacted] 도로 102제곱미터

이상 토지 2,160제곱미터

8. 동 소 [redacted]·[redacted]위 지상 공장 철파이프조스레트지붕 870제곱미터, 기숙사, 창고, 철콘크리트및 벽돌조 슬래브지붕단층90,44제곱미터, 지하실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스래브지붕 단층, 35,36제곱미터, 부속건물 수위실 벽돌조 슬래브지붕 41,15제곱미터 이상 건물 1,036,95제곱미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별지2

기계기구 목록

기호	명 칭 (종 류) 구조.규격.형식.용량	제 작 자 제작일자	수 량
1	대기오염방지시설 Bag Filter & Cyclone Type Cap.:300㎥/min 1)Bag Filter SS41, 2400x6000x4800mm Filter Bag: ø180x2400 - 144ea Turbo Fan:300CMMx350mmAqx15Kw 2)Cyclone - 2set SS41, ø1,200x3,600mm Dust Box: ø1200x900mm 3)Gas Cooling Tower SS41, ø600x6500mm - 8 4)국소배기시설(Bag Filter) SS41, 1200x1200x2400mm Filter Bag: ø180x2400 - 16ea Turbo Fan:3.2㎥x3.7Kw Hood(도가니로측) 5)Pipe Duct & Etc.		1식
2	Truck Scale Cap.:50tons 3,000x9,000mm Computer Computer:Model AD-3311T Printer:Model LQ570H		1
3	도가니로 Cap.:3tons/Hr Dim.:1,500x3,650x1,400Hm 외부:SS41 내부:내화벽돌(SK34) 정류 Burner:Rotary 0.2ton 정류보조장치:자동나오증	(유)태호	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기호	명 칭 (종 류) 구조.규격.형식.용량	제 작 자 제작일자	수 량
4	대기오염 방지시설		1식
	Cyclone & Bag Filter Type	'94.1	
	1)여과집진시설(Bag Filter)		
	Cap.: 350m³/min		
	Bag House(SS)		
	W2,600 x L6,000 x H3,500		
	Hopper(SS)		
	W2,600 x L6,000 x H1,500		
	Screw Feeder: ø250xL4,000		
	Geared Motor: 1.5Kw		
	Bag Filter		
	ø270 x H3,500 x 96ea		
	Turbo Fan		
	DTF-20		
	350m³/min x 40Kw		
	2)원심력 집진시설(Cyclone)		
	Cyclone Body(SS)		
	ø1,200 x H3,000 x 2ea		
	Sludge 처리조(SS)		
	820 x 920 x 920		
	900 x 1,900 x 900		
	3)Cooling Tower(SS)		
	ø600 x H3,600 x 6ea		
	Duct Room(SS)		
	W1,800 x L3,000 x H1,200		
	4)Duct		
	SS41, ø600 x L50,000		
	5)연돌		
	SS41, ø400xL32,000xH24,000		
	6)기타부대설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기호	명 칭 (종 류) 구조.규격.형식.용량	제 작 자 제작일자	수 량
5	경유로 Pb 합금용 Cap. : 5Ton/1회 1,900 x 1,900 x 1,100mmH 외부: SS 내부: 내화벽돌(SK 34) 경유 Burner 경유보조탱크 국소집진설비 Bag Filter Type 기타부대시설	국산	1
6	Hoist Crane Single Girder Cap. : 2.8Ton(반도) Span: 7m Travel: 8m 기타필수조용	국산	1식
7	분쇄기 Rotary Blade Motor:11Kw 탈수기 SUS	국산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기호	명 칭 (종 류) 구조.규격.형식.용량	제 작 자 제작일자	수 량
가	Rotary Kiln 전기품 Cap.: 5Ton/Hr Temp.: Max. 1,200℃ 내부: 내화벽돌(SK-36) 외부: SS 6T ø2,000 x L3,800 Main Motor: V.S 5.5Kw Burner Master 20 Blower: 3.7Kw Screw Conveyor ø250 x L2,000 x 3.7Kw 저장 Hopper Frame H-Beam 및 무늬철판 6,300 x 5,000 x H3,000 집제포(내화벽돌조) W800 x L1,600 x H950 B.C Oil Tank(SS) ø 2,400 x H3,200 V.S Motor: 1.5Kw 기타부대시설일체	[] '93.4	1식
나	Crane(O.H.C) Cap.: 2Ton Single Girder Span: 6m Travel: 35m 양정: 6m 와룽보장(SS Pipe) ø150 x H6m x 16ea	국산 '93.4	1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기호	명 칭 (종 류) 구조.규격.형식.용량	제 작 자 제작일자	수 량
10	Rotary Kiln 전자동 Cap.: 5.5Ton/Hr Temp.: Max. 1,300℃ 내부: 내화벽돌(SK-36) ø1,000 x L3,800 외부: SS ø1,300 x L3,800 x 12T Main Motor: V.S 5.5Kw Burner Master 20 Blower: 2.2Kw 경계도(내화벽돌조) W800 x L900 x H850 B.C Oil Tank(SS) ø1,500 x H2,000 Hopper SUS+SS, 5 x 6 x 0.8mM 기타부대시설	□ '93.6	1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별지3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1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